

제 513 호

1975. 8.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광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운영

제 417 호 :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장사무처 규정 증개정 규정 3

제 418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인턴 및 간호원등 급식규

정 개정 규정 5

제 419 호 : 서울특별시 소방서회무규정 개정규정 6

제 420 호 : 서울특별시 식물원화분관리규정 9

◎고시

제 117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2

제 118 호 :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 1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훈령

서울특별시장수도과장사무처리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 서울특별시 훈령 제 417 호

서울특별시장수도과장사무
처리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장수도과장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9 조 2 항 1 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
를 신설한다.

• 다만, 공사진행당 1.45회를 승한
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8 조 (교지서 송달) 교지서는 남
마감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 6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4 조 (처분과 통지) ① 차례로를

제 2 차 남부외무자로 부터 징수코자
할때는 당해 부정금수된 토지와
건물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등을
공동남부 외무자로 하여 처분하여

야 한다.

② 차례로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외반자에게 송달하여 처분별 내용을
공동 남부외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64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4 조 2 (장체조치) 구청장은 천조
의 처분금액을 지정된 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
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을 발부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산합류등
장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체권 보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기 마감 전이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65 조 제 2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제 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13-4 제513호 시보 1975.8.1.

별표제 2호

파 래 표 처 분 기 준

처분 종류	해당조문	파 래 표		
		조례제 41조제 1항	조례제 41조제 2항	조례제 41조제 3항
급수도용	39-1-2	포탈기간에 절친 추정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다음의 비 율로 산정 1. 가사용: 2배 2. 기타업종: 3배		
부정급수공사	39-1-3	3,000원	조례별표제 1호에 의한 가입금을 다 음의 비율로 산정 1. 가사용: 2배 2. 기타업종: 3배	
양수기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39-1-4			
무허가 특수수작업 시설 설치운영	39-1-5			
시설소화전의 무 단사용 불합과손	39-1-6			
징수처분 수전 무단 개전사용	39-1-7			
요금 또는 수수료 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기타부정행위를 한자				
※ 조례제 41조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은 병과 가능				

서울특별시인턴 및 간호원등 급식
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 훈령 제 418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인턴 및 간호원 등
급식 규정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립병원인턴 및 간호원 등 급식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종사원 급식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병원 종사원의 급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원의 급식
에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의 종사원이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지먼트, 인턴 및 엑스턴 : 시립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종사하는
서울특별시 임시의사 규정에 의한
해지먼트, 인턴 및 엑스턴
2. 간호원 : 시립병원에서 환자 간호
에 종사하는 간호원, 간호보조원면
허증 소지자 및 보모

3. 영양사 : 시립병원에서 환자의
영양관리에 종사하는 영양사자격
증 소지자
4. 취사부 : 시립병원에서 취사업무
에 종사하는자
5. 간시원 : 시립병원에서 입원환자
(정신병환자 및 마약환자) 외
간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급식) 종사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1일 3회의 식사
를 균등하게 급여한다. 다만, 소속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를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당직료제의) 종사원에 대하여는
당직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처무규정 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8. 1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 훈령제 419호

서울특별시 소방서 치무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소방서 치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 조 소방서(이하 "서"라 한다)
의 사무는 소방서장(이하 "서장"
이라 한다)의 결재를 거쳐서 처
리하여야 한다.

제 2 조 서장이 부재시에는 소방과장
이 그 사무를 대결한다. 다만,
인사비밀 및 일반기밀에 관한사항
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대결문서는 서장이 등청후
곧 후열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
열을 받는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 4 조 서는 별지제 1호서식에 의한
차안일지를 비치하고 직원의 출장
인사이동 및 균무상황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조 화재출화지휘는 서장이 이에
임한다. 다만, 서장의 출근전 또는
부재시에는 과장 또는 당직간

부가 이를 대리한다.

제 6 조 서장은 인근 또는 타서관내에
서 출화하였을 때 소속직원의 응원출
동을 명할수 있다. 다만, 응원출동
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직원은 출화로 현장작업에 임
하였을 때에는 비번 직원일지라도 즉
시 현장에 임하여 현장지휘관의 지
휘에 따라 화재현장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 8 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출화
통보를 접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다만
타관내에서 발생한 화재통보에 접하
였을 때에는 그 관할서에 통보하는
동시 상황에 따라 적외 조치한다.

제 9 조 ①화재이외의 재해에 있어서의
출동은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전황의 출동에 관하여도 제 5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조 화재현장의 출동, 비상소집 기
타근무에 관한 세칙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서장이 이를 정한다.

제 11조 서장은 화재경방에 관한 계획을 정
확히 수립하여 그 방법을 습득시켜야 한다.

제 12조 서장은 소방기체기구에 관한
보존수리정비 및 조작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전직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p>제 13 조 ① 당직은 휴일 또는 집무시간외에 있어서의 출동준비 청사 및 서내의 정리와 기타 업무에 임한다.</p>	<p>로 편성하고 출번제로 근무를 한다. 단, 비상경계 기타 필요한 예에는 서장은 당직원을 중감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근무방법은 서장이 이를 자로 정한다.</p>	
<p>제 14 조 당직근무자는 당직간부 1명과 내근소방사 및 소방원 2명으로서</p>	<p>이 규정은 반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p>

<부지제 1호서식>(갑)

처 안 일 지		제 작 과 장 본부장 전결								
197 . . . 요일. 날씨 ()										
정 현 원	정 원	현 원	동 태				상 환			
			제	연가	병가	파견	출장	구속	휴직	기타
중요행사 및 회의	명 칭 시간 장소 주최 참석 내 용									
중요화제 사건 및 사 고										

13-8 제 513호

시

보

1975. 8. 1

<별지 제 1호서식>(용)

항 목	내 용	비 고
일 반 사 항		

서울특별시 식물원 화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 서울특별시 훈령 제 420 호

서울특별시 식물원 화분관리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식물원 화분의 손상과 분실을 방지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시 산하 공원관리사무소 식물원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화분을 타 기관의 행사용으로 대여하였을 때의 대여 절차는 별도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조(대여) 식물원에 비치된 화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장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별표 1의 신청서를 사용 2일전에 해당 공원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대여료) ① 화분대여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대여요금은 원상화분 구입에 상당한 금액을 사전 납부하고 반납 시에 대여료를 정산환불한다. 다만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책임하에 대여로만 납부로도 할 수 있다.

제 5조(통지) 해당 공원 관리사무소장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여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변상) 대여자가 화분을 분실 또는 폐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화분 구입비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7조(운반) 대여받은 화분은 대여자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은 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

제 9조(수입) 화분 대여료는 징수 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10 제513호

시 보

1975. 8. 1

<별표 1>

(전면) 화분대여신청서

1. 신청서	주 소	
	성 명	
2. 대여장소		
3. 기간		
4. 화분종류		수량
5. 화분사용사유		
6. 관리책임자		

위와 같이 화분대여를 차용자 수칙(이면)대로 성실히 이행키로
하고 신경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용자

(이면) 차용자 수칙

1. 대여화분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기재된 대여기간을 준수 반환하되 초과시는 대여초과료를 부과한다.
3. 대여화분이 햇빛에 방열되어 고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운반차량은 포장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02>

화물 대여료

화물종류	규격	대여료 (원)	기 고
화 물 류	대	40 원	교 51센치 이상
	중	30	31 - 50 센치
	소	20	10 - 30 센치
판 영 식 물	대	60	교 61센치 이상
	중	40	41 - 60 센치
	소	30	20 - 40 센치
다 육 식 물	대	60	교 70센치 이상
	중	50	51 - 70 센치
	소	30	10 - 50 센치
선 인 장 류	대	100	교 31센치 이상
	중	40	21 - 30 센치
	소	20	1 - 20 센치

13-12 제 513 호

시

보 1975.8.1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침승인

- 건설부고시제 95호(75.6.13)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제3수출 산
업공단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침승인을 도시계획법제 13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권한위
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4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신설	승로	2	130	15m	90m	가리봉전철역	가리봉동 463번지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영등포
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일단위공업
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 73.4.24자 서울시고시 제 55
호로 일단위공업단지 조성사업 실
시계획인가 한바 있는 제3수출
산업공업단지내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변경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제 26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권한위임사항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4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설시계획변경내역

구 분	사 업 시 행 계 획			비 고
	달 초	변 기 시 행 (1 단계)	경 장 차 시 행 (2 단계)	
사 업 기 간	73년 - 75년	73년 - 75년	76년 - 80년	
사 업 면적	1,251,571㎡	1,120,000㎡	131,571㎡	
시 설	운동장	19,800㎡	14,100㎡	5,930㎡ 증 230㎡ 위치변 경은 도면참조
	수영장	6,200㎡	5,970㎡	- 감 230㎡ 위치변 경은 도면참조
	유수지	10,560㎡	10,560㎡	- 위치변경은 도면참조
	오수처리장	13,200㎡	-	13,200㎡ *
	도로신설	-	폭 15m, 장이 90m	- 경찰역 진입로 신설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및 영등포구청에 보관.